《학원 등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》

◎ 교육결과 제출 방법: **메일** vudtod1@cne.go.kr / **팩스** 041-554-4324 / **학원업무통합시스템** (3가지 중 1가지 선택)
◎ 제출기한: 2026. 11. 13.(금) 까지 ※ 학원, 교습소, 평생교육시설 명칭 반드시 기재

순	교육구분	대상자	횟수	교육수강방법
1	**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**	학원(독서실), 교습소,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전체 (운영자, 강사, 직원)	연 1회 1시간 이상	1.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후, **천안교육지원청에 이수 결과 제출** 가. **집합교육**: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(https://edu.ncrc.or.kr) 동영상 활용하여 교육 후 → **교육결과보고서, 교육 현장 사진, 교육 참석자 서명 제출** 나. **사이버교육** - 경기도 지식캠퍼스: https://www.gseek.kr - 서울시 평생학습포털: http://sll.seoul.go.kr → 이수 후 **수료증(이수증) 제출** **2.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**
2	**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 교육**	학원(독서실), 교습소,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전체 (운영자, 강사, 직원)	연 1회 1시간 이상	1.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후, **천안교육지원청에 이수 결과 제출** 가. **집합교육**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(https://www.mohw.go.kr)→정보→연구/조사/발간자료 →20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 안내 활용하여 교육 후 → **교육결과보고서, 교육 현장 사진, 교육 참석자 서명 제출** 나. **사이버교육** - 경기도 지식캠퍼스: https://www.gseek.kr - 한국보건복지인재원: https://www.kohi.or.kr → 이수 후 **수료증(이수증) 제출**
3	**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**	학원(독서실), 교습소,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전체 (운영자, 강사, 직원)	연 1회 1시간 이상	1.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후, **천안교육지원청에 이수 결과 제출** 가. **집합교육**: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(www.naapd.or.kr)→교육/홍보→신고의무자교육→교육자료 활용하여 교육 후 **교육결과보고서, 교육 현장 사진, 교육 참석자 서명 제출** 나. **사이버교육** - 경기도 지식캠퍼스: https://www.gseek.kr - 서울시 평생학습포털: http://sll.seoul.go.kr → 이수 후 **수료증(이수증) 제출** 2. **관련 범죄 미신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**
4	**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**	**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대상**으로 하는 학원의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**(교습소 제외)**	연 1회 4시간 이상 **(실습 교육 2시간 포함)**	1. 온라인 및 집합(실습)교육 모두 이수 후, **천안교육지원청에 이수 결과 제출** 가. 교육 안내 및 신청: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(https://lms.educare.or.kr) 나. **총 4시간[온라인(이론) 2시간+집합(실습) 2시간]** → 이수 후 **수료증(이수증) 제출**